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증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 을 "건축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 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 4조(변소)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 을 "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 5조(지하층의 설치) 중 "건축법 제22조의 3항" 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 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 손실 방지) 중 "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 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로 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
로 한다.

동조제1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 를 "건축물의 설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4"로 한다
동조제2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를 "건축물의 설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5"로 한다

제 7조(건축재료의 품질) 중 "건축법 제25조" 를 "건축법 제42조"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5조" 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 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중 "건축법 제27조제1항" 을 "건축법제 33조제1항"으로 한다

제 9조(건축선의 지정) 중 "건축법 제30조제1항" 을 "건축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 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중 "건축법 제31조제2항" 을 "건축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건폐율)중 "건축법 제39조"를 "건축법 제47조"로 한다

제12조(대지면적의 취소한도)중 "건축법 제39조의 2제3항"을 "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중 "건축법 제41조"를 "건축법제51조및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중 "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3호나목 및 다른"을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대지안의 금지)중 "건축법 제41조의 2"를 "건축법 제50조"로 한다

동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호"로 한다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호"로 한다

제17조(주택의 건설기준)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4제2호다목과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제14조, 제22조 내지 제24조의 2,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